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2. 19(금) 10:00

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61호
- 나. 제 출 자 : 김경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2. 8.
- 라. 회부일자 : 2021. 2. 8.

2. 제안이유

금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
- 나.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 (안 제3조)
-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부터 제5조)
-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심의 및 자문 (안 제7조)
- 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지원사업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1. 2. 8. ~ 2. 15.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금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 2)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안 제3조)
- 3)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부터 제5조)
 - 제4조 책무 조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의 규정과도 부합하는 것이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소통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봄.
-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심의 및 자문(안 제7조)
- 5)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지원사업(안 제8조)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 인식개선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되는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어를 통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보조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복지와 사회참여 및 의사소통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제정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